
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8] <개정 2025. 8. 7.>

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(제68조 관련)

1. 비소 또는 그 화합물
2.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
3. 수은 또는 그 화합물
4.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
5. 납 또는 그 화합물
6. 시안화물
7.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
8.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
생태유해성물질